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한 해당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 설치 (안 제5조)
- 나.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평가단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반장으로 하는 평가반 운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진 재해 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4. 5 ~ 2013.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평창지역본부장"이라 한다)

- 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 4.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평창군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평창지역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평창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평창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평창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 원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평창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평창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④ 평창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평창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평가단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평창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 ④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평창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평창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평창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창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 3. 화재 발생 상황
 -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1. 위험(별지 제3호 서식)
 - 2. 주의(별지 제4호 서식)
 - 3. 안전(별지 제5호 서식)
 - ⑤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출입통제 표지(별지 제6호 서식)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평창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평창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 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평창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조치 등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 ④ 평창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창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 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 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 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평창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형 일			
	1						
성 명			주민	번호			
소 속			직	그			
주소 : (-)				전화 : ()	
						FAX: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년월일신청인:(인)

제 0 0 - 0 0 0 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 가 단 원 증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mark>안 전</mark>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보 장과 지역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조례(안)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와 제11조(경비지원)에서 평가 단원의 안전 확보와 평가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수당, 여비, 차량임차비 등)와 관련한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3. 미첨부 사유

- □ 이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현장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만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및 상해를 당했을 경우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 □ 평가단 활동경비(수당,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분히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임

4. 작성자

□ 평창군 건설방재과, 과장 이운배(033-330-2406)

관계법령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①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